##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9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전종덕·박지원·이개호

박홍배 · 송재봉 · 박희승

김남희 · 고민정 · 이학영

소병훈 · 용혜인 · 추미애

어기구 • 오세희 • 민형배

김 윤 · 신장식 · 오기형

전진숙 · 정혜경 · 이수진

박해철 • 백승아 • 김재원

조 국 · 서왕진 · 백혜련

송옥주 • 유종오 • 서미화

한창민 · 남인순 · 임미애

권향엽 • 이용우 • 문금주

서영교 · 정진욱 · 신정훈

모경종 • 서삼석 • 정을호

의원(4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 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 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 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8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 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 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 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 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 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 여야 한다.

제93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사용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
	술인(이하 "예술인" 이라 한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u>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u>
	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
	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 수립 등) (생 략)	의 수립 등)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1)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 6. (생 략)
~ 6 (생 략)

<신 설>

-----. -----. 1. 제3조의3제1항-----

- 2. ~ 6.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한다.

-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가입 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
-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 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 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 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 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 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 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 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

- 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 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 칭,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 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 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 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 조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 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 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 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수 없다.

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직장
가입자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
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
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
약이 끝난 날부터 3년동안 노
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
<u>다.</u>
세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
<u>~10</u>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제94조(신고 등) ① <u>사용자,</u>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